

부 산 가 정 법 원

심 판

사 건 2017느단200461 양육비변경심판청구
청 구 인 갑 (1972년생, 남)
주소
송달장소
소송대리인 변호사
소송복대리인 변호사
상 대 방 을 (1965년생, 여)
주소 부산
소송대리인 법무법인
사 건 본 인 A (2001년생, 여)
주소 상대방과 같다.

주 문

1.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.
2.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 법원 2017너*** 이혼 등 사건의 2017. 6. 27.자 조정조서

중 양육비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청구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0. 9. 2.까지 매월 26일에 170만원씩을 지급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. 10.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혼인 생활을 하였다.

나.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 법원 2017년***호로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고, 위 사건의 조정기일인 2017. 6. 27.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(이하 '이 사건 조정'이라 한다)이 성립되고, 조정조서(이하 '이 사건 조정조서'라 한다)가 작성되었다.

○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.

○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과 상대방을 공동으로 지정하고,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한다.

○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. 7. **.부터 2023. 12. **.까지 매월 26일에 3,000,000원씩을 지급한다. 이와 별도로 청구인 회사에서 사건본인의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 전액을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지급한다(시거나 대학원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사건본인의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은 전액 지급한다).

..... <후략>

다.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 조정성립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17. 7. 10. 청구외 병

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, 병은 자녀로 청구의 정(95. 3. 28.생)와 무(2000. 7. 19.생)을 두고 있다.

2.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인의 월 급여 평균가 770만 원 정도이고, 청구인이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려 3명의 부양가족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,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의 액수 및 지급기한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감액,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① 청구인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지 불과 1달 보름 정도 지난 2017. 8. 14. 이 사건 양육비 감액 심판청구를 한 점,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 당시나 이 사건 심판 청구 당시 각 ***건설(주)에 재직 중으로서 직업에 변동이 없고, 청구인의 2016년도 1년간의 급여 및 상여금이 합계 9300여 만 원(월 평균 770만 원 가량)이었으며, 2017. 1.부터 2017. 7.까지의 7개월간 급여 합계가 5500여 만 원(월 평균 780만 원 가량)으로서 그 소득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점, ③ 이 사건 조정 조항은 청구인 자신이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하면서 제시했던 합의안과 거의 비슷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이혼 의사가 완강하고,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, 무엇보다도 청구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 후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2017. 7. 10. 병과 혼인신고를 마침으로써 청구인과 병의 관계 또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, 청구인이 이 사건 조정 성립 후 부양가족으로

병 및 그녀의 자녀 2명을 더 부양해야 한다는 사정은 이미 이 사건 조정 성립 당시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(더욱이 청구인이 병의 자녀 2명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도 부족하고, 그 자녀 중 정은 이미 성년이기도 하다), ⑤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청구인은 현재 약 640만 원 가량의 월급을 실수령하고 있다는 것인데, 상대방은 현재 무직으로서 전업주부이고,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양육비의 지급시한은 2023. 12. **.까지로서 앞으로 6년가량만 남은 점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양육비 300만 원이 청구인이 감당하기에 벅찬 과도한 금액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양육비 액수 및 지급기한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,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이 사건 심판 제기시나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감액하거나 지급기한을 줄여야 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.

2017. 12. 12.

판사 박 상 현